

# 합병계약서

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시민 안전 및 공공서비스 확보를 최우선으로 지하철의 안전운행, 작업자의 안전, 새로운 교통체계의 마련 등을 위하여 「서울메트로」와 「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」가 합병하여 「서울교통공사」를 설립하기 위해 상법 제5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합병 계약을 체결한다.

## 제1조 【합병방법】

‘서울메트로’와 ‘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’는 합병하여 ‘서울교통공사’를 설립하고, ‘서울메트로’와 ‘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’는 해산한다.

## 제2조 【목적】

‘서울교통공사’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3조 【명칭】

‘서울교통공사’의 명칭은 ‘서울교통공사(영문명 Seoul Metro)’라 한다.

## 제4조 【사무소의 소재지】

‘서울교통공사’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.

## 제5조 【자본금】

‘서울교통공사’의 자본금은 금19,376,731,375,013원(금일십구조삼천칠백육십칠억삼천일백삼십칠만오천일십삼원)으로 하고 ‘서울특별시’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 단, 합병기일까지 ‘서울메트로’와 ‘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’의 재무상태에 의하여 자본금, 부채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동액 만큼 조정할 수 있다.

## **제6조 【합병기일】**

‘서울메트로’와 ‘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’의 합병기일은 2017년 5월 8일 (예정)로 한다. 다만, ‘서울메트로’와 ‘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’의 대표자 간의 협의에 의해 이 합병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.

## **제7조 【직원의 고용승계】**

‘서울메트로’와 ‘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’의 직원은 합병기일에 ‘서울교통공사’의 직원으로 고용승계 된다.

## **제8조 【임원의 임기】**

‘서울메트로’와 ‘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’의 임원은 합병기일 전일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.

## **제9조 【사업의 승계】**

‘서울메트로’와 ‘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’가 추진한 사업 또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합병기일에 ‘서울교통공사’가 추진한 사업 또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다.

## **제10조 【권리·의무의 승계】**

‘서울메트로’와 ‘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’의 자산과 부채 및 그에 부대하는 권리·의무 일체는 합병기일에 ‘서울교통공사’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며, ‘서울교통공사’에 승계된 자산의 가액은 ‘서울교통공사’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.

## **제11조 【자산의 실사】**

‘서울메트로’와 ‘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’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 등을 위해 공동으로 자산상태를 실사한다.

## **제12조 【설립준비】**

‘서울교통공사’ 설립과 ‘서울메트로’와 ‘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’의 해산 등 제반업무 처리를 위해 ‘서울특별시시장’은 설립준비위원회와 설립준비단을 구성하여 ‘서울교통공사’ 설립 시까지 운영한다.

## **제13조 【설립비용 및 해산비용】**

‘서울교통공사’의 설립비용 및 ‘서울메트로’와 ‘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’의 해산비용은 ‘서울메트로’와 ‘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’가 각각 부담한다.

## **제14조 【합병승인 이사회 기일】**

‘서울메트로’와 ‘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’는 2017년 3월 27일까지 각 이사회를 소집하여 본 계약의 승인 및 그 밖의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의한다. 다만, 합병절차의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‘서울메트로’와 ‘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’의 협의에 의하여 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.

## **제15조 【선량한 관리자의 의무】**

‘서울메트로’와 ‘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’는 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집행하고 모든 재산을 관리·운영하여야 하며, 또 그 재산 및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‘서울메트로’와 ‘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’가 협의하여 ‘서울특별시시장’의 승인을 얻은 다음 실행하여야 한다.

## **제16조 【계약의 변경 등】**

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는 사이에 천재지변 혹은 그 밖에 ‘서울메트로’ 또는 ‘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’의 재산이나 경영 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‘서울메트로’와 ‘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’가 협의하여 ‘서울특별시시장’의 승인을 얻은 후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**제17조 【계약 외 사항】**

본 계약에서 규정한 이외의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계약의 취지에 따라 '서울메트로'와 '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'가 협의하여 '서울특별시장'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.

**제18조 【기업결합신고】**

본 계약은 공정거래법 제12조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전제로 한다.

**제19조 【계약의 효력발생】**

본 계약은 '서울메트로'와 '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'가 각 이사회 승인과 '서울특별시장'의 승인을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'서울메트로'와 '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'의 대표자가 기명날인하고 '서울특별시장' 및 '서울메트로'와 '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'가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3월 10일

(서울메트로) 주 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

법인명 : 서울메트로

대표자 : 김 태 호



(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) 주 소 :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

법인명 :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

대표자 : 최 용 운

